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4. 7. 18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달서구청장
- 나. 제출일자 : 94. 5. 20
- 다. 회부일자 : 94. 5. 21
- 라. 상정일자 :

- 제2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1차위원회(94. 5. 30) 최초상정
 - 조사위원회
 - 조 사 위 원 : 6인(김정해조사위원장, 박용갑위원, 이기도위원, 하중수위원, 권춘갑위원, 이종택위원)
 - 조 사 기 간 : 93. 6. 13 ~ 6. 23(11일간)
 - 조사대상기관 : 청소과, 달서위생사, 경북정화(주), 일성위생(주)
- 제2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1차 위원회(6. 26) 계속상정하였으나 자료제출내용 미비로 조사기간 연장 : 7. 10
- 제2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1차위원회(94. 7. 18) 조사위원장 조사결과 보고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사유

분뇨 관련영업요금이 물가 인상등 여러가지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오랫동안 인상되지 않아 영업상 문제점과 그로인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 분뇨수집, 운반요금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인상 조정하고 시민의 이해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분뇨 수집, 운반요금 기준을 18리터 단위에서 10리터 단위로 합과 동시에 정화조 청소요금 기준을 입방미터와

리터로 병기함.

나. 주요골자

분뇨관련 영업요금 인상 및 요금기준 단위 변경

• 현 행

- ┌ 분뇨수집, 운반요금 : 18ℓ당 214원(분뇨처리시설 수수료 1ℓ당 1원 포함)
- └ 정화조 청소요금

- ┌ 기본요금 : 0.75㎡당 12,350원
- └ 초과요금 : 0.75㎡ 초과시 0.1㎡ 893원 가산

• 개 정

- 분뇨수집, 운반요금 : 10ℓ당 130원(처리수수료 포함)

- 정화조 청소요금(처리수수료 포함)

- ┌ 기본요금 : 0.75㎡(750ℓ) 이내 12,960원
- └ 초과요금 : 0.75㎡(750ℓ) 초과시 0.1㎡(100ℓ) 937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성준)

본 개정조례(안)은 94. 4. 21 제24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 달서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한 바 있으나 그 당시 분뇨관련 요금 인상조항 제11조를 부결시킨 사항임.

분뇨관련 영업요금은 대구직할시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조례 제2467호(90. 1. 31)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해오고 있으며,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분뇨관련 요금인상 및 요금기준 단위를 변경하는 것으로 현재 분뇨수집운반요금 18ℓ당 214원(분뇨처리시설수수료 1ℓ당 1원 포함)을 10ℓ당 130원(처리수수료 포함)으로 9.4% (ℓ당1원12전)인상하고, 정화조 청소요금은 현재 기본요금 0.75㎡(750ℓ)당 12,350원 하던 것을 0.75㎡(750ℓ)이내 12,960원으로 4.9%(610원) 인상하고, 초과요금은 현재 0.75㎡(750ℓ)초과시 0.1㎡(100ℓ)마다 893원 가산 하던 요금을 0.75㎡(750ℓ) 초과시 0.1㎡(100ℓ)마다 937원으로 4.9%(44원)인상시키는 내용임. 검토의견은 현재 적용하는 분뇨관련 요금은 90년도 제정한 것으로 그간의 물가상승 및 3D직중 기피현상으로 인한 구인난 등 제반여건의 어려움이 있고, 종사자의 처우개선, 다른

대행업체와 형평성등을 감안해 볼 때 요금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됨.

4. 질의답변 요지

질의답변 없이 조사위원회 구성 의결

5. 조사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요지(위원장 : 김정해위원)

- 분뇨 처리대행업체인 달서위생은 경영상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나 종업원들의 저임금 해소 및 제반여건을 고려, 당초 인상요구안 10ℓ당 130원을 10ℓ당 127원으로 하고
-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매년 30% 정도씩 물량이 증가 추세이므로 인상요인이 없으나 종합적인 서비스 개선과 초과분 요금 단수를 조정, 주민과의 마찰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 기본요금(0.75㎡) 12,350원을 12,500원으로(요구안 12,960원) -인상율 1.2%
 - 초과요금(0.1㎡) 893원을 900원으로(요구안 937원) -인상율 0.8% 조정

6. 토론요지

- 조사위원회에서 조사결과 제시한 원안대로 반대없이 의결함.

7. 수정안 요지

가. 수정안 요지

- 조례 제11조 제1항 1호 분뇨수집, 운반요금 : 10ℓ당 130원을 127원으로
- 조례 제11조 제1항 2호
 - ┌ 기본요금 : 0.75㎡(750ℓ)이내 12,960원을 12,500원으로
 - └ 초과요금 : 0.75㎡(750ℓ)초과시 0.1㎡(100ℓ)마다 937원을 900원으로 수정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첨부 : 수정조례안 1부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분뇨관련영업의 요금) ①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의 요금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분뇨수집, 운반요금 : 10ℓ당 127원(처리수수료 포함)

2. 정화조 청소요금(처리수수료 포함)

가. 기본요금 : 0.75㎡(750ℓ)이내 12,500원

나. 초과요금 : 0.75㎡(750ℓ)초과시 0.1㎡(100ℓ)마다 900원

② 동조제1항제2호의 정화조 청소요금은 정화조별로 발생한 오니(오수포함)의 양에 따라 개별로 산정한다. 이 경우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의 조내 청소비는 정화조 청소요금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 동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처리수수료는 대구직할시분뇨처리시설처리수수료징수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④ 오수정화시설 청소요금은 동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제3항의 요금산정 방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 행 | 개 | 정 (안) | 수 | 정 (안) |
|--|---|---|-------|---|-------|
| 제11조(분뇨관련 영업요금)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요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분뇨·수집운반요금 : 18 ℓ당 214원 (분뇨처리시설 수수료 1 ℓ당 1원 포함) 2. 정화조 청소요금 가. 기본요금 : 0.75㎡이내 12,350원 나. 초과요금 : 0.75㎡ 초 과시 0.1㎡마다 893 원 가산 “주” 용량기준은 개별정화 조 용량을 말하며 조내 청 소비 및 분뇨처리시설수수 료(1ℓ당 1원)가 포함된 요 금임. | 제11조(.....영업의 요금) ①.....영업의..... 1. 분뇨·수집운반요금 : 10ℓ당 130원 (처리수수료 포함) 2. 정화조 청소요금 (처리수수료 포함) 가. 기본요금 0.75㎡이내 12,960 원 나. 초과요금 : 0.75㎡ 초과시 0.1㎡(100 ℓ)마다 937원 ② 동조제1항제2호의 정화조 청소요금은 정화조별로 발 생한 오니(오수포함)의 양 에 따라 개별로 산정한다. 이 경우 분뇨처리시설 처리 수수료와 조내 청소비는 정 화조청소요금에 포함된 것 으로 본다. ③ 동조제1항제1호 및 제2 호의 처리수수료는 대구직 할시분뇨처리시설처리수수 료 징수등에관한조례의 규정 에 의한다. ④ 오수정화시설 청소요금은 동조제1항제2호, 제2항 및 제3항의 요금산정 방법을 준용한다. | 제11조(.....영업의 요금) ①.....영업의..... 1. 분뇨·수집운반요금 : 10ℓ당 127원 (처리수수료 포함) 2. 정화조 청소요금 (처리수수료 포함) 가. 기본요금 0.75㎡이내 12,500 원 나. 초과요금 : 0.75㎡ 초과시 0.1㎡(100 ℓ)마다 900원 ② 동조제1항제2호의 정화조 청소요금은 정화조별로 발 생한 오니(오수포함)의 양 에 따라 개별로 산정한다. 이 경우 분뇨처리시설 처리 수수료와 조내 청소비는 정 화조청소요금에 포함된 것 으로 본다. ③ 동조제1항제1호 및 제2 호의 처리수수료는 대구직 할시분뇨처리시설처리수수 료 징수등에관한조례의 규정 에 의한다. ④ 오수정화시설 청소요금은 동조제1항제2호, 제2항 및 제3항의 요금산정 방법을 준용한다. | | | |